

2001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한국원자력학회

원자력손해배상 체제의 개편과 협약가입의 특성

Improvement of Nuclear Liability System and pros and cons for Becoming a Party to Conventions

김상원, 장군현, 오병주, 유선오, 강석철, 이종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19번지

요 약

2001년 개정 공포된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하면 원자력손해의 개념이 확대되고, 책임제한액과 강제적 배상조치액을 3억SDR 수준으로 하였으며, 인적손해 배상청구의 소멸시효 기간이 30년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국제협약 가입의 선결조건을 마련하였으며, 개정에 따른 비용과 그로부터 한국의 원자력사업자가 얻는 이득이 균형을 이루는 한에서 국제협약 가입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accordance with the 2001 amendment of the Nuclear Liability Act of 1969, the definition of nuclear damage was extended, the amount of liability and compulsory financial security became 300 million SDRs, prescription period for personal injury or loss of life became 30 years.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benefit of becoming a party to an international nuclear liability regime keeps in equilibrium with the cost thereof, we may become a party to the convention.

원자력손해배상 체제의 개편과 협약가입의 드실

1. 원자력 손해배상 관련 협약 및 국내법의 개정

가.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국제협약의 기본 일개의 개선 필요성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국제협약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68년 발효된 파리협약(Convention on Third Party Liability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of 29th July 1960; 이하 "P/C")과 1977년 발효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이하 "V/C") 체제가 있는 바, 체르노빌 사고로 이것의 실제 적용성이 관심으로 떠오를 때까지는 당초의 협약 취지 즉, 첫째, 체약국은 자국내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과 둘째, 국경을 넘는 원자력손해에 관한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에 관하여 일정한 원칙을 합의한다는 것에 충실하였고 이에 가감의 필요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없었다.

그러나, 체르노빌 사고가 있은 후 이러한 국제협약 체제의 개선 필요성이 현실로 대두되었다.

그 하나는 협약 적용의 보편성 확보 문제로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P/C는 14개국의 체약국에 전세계 원자로 기수의 34%가, V/C는 32개국의 체약국에 원자로 기수의 6%가 적용을 받고 있어 아직 세계의 많은 국가와 원자력시설이 협약적용의 범위 밖에 있다는 점과, 다른 하나의 문제는 체르노빌 사고에서 보듯이¹⁾ 일단 원자력사고가 있은 경우에는 현행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배상책임 수준을 훨씬 넘을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전자의 문제점에 관하여는 기존의 양협약 체제를 기술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P/C나 V/C 중 어느 한 협약의 당사국은 원자력사고가 있을 경우 다른 협약의 당사국으로 취급될 수 있도록 하는 협약, 즉 1992년 발효된 Joint Protocol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Vienna Convention and the Paris Convention; 이하 J/P) 협약 당사국 수와 원자로 기수라는 점에서 협약의 적용범위를 늘리는 것으로, 후자의 문제에 대하여는 배상책임 최저한도·원자력손해의 범위 확장·소멸시효기간의 연장 등 현행 협약의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보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 올린다는 것으로 개정방향을 잡게 되었다.

나. V/C의 개정

V/C에 관하여는 IAEA 주관으로 약 10년간의 상설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1997. 9. 29.

1) 통계에 의하면 체르노빌사고의 손해규모는 환경손해를 포함하면 어떤 통계는 100억 파운드를 상회한다고 한다.

외교회의에서 개정의정서가 채택되고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최저책임한도액을 3억SDR로 인상 (점진적 인상 가능), ii) 환경손해 및 방제조치 비용을 포함하는 원자력손해의 개념 확장 iii)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연안국 관할권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지리적 적용범위의 확대 iv) 인적손해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는 등이다.

다. 보충배상협약

비엔나협약 개정의정서 채택과 함께 파리협약에 있어서의 Brussel 보충협약과 같이 비엔나 협약에도 국내 배상한도를 넘는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추가로 배상하기 위한 보충배상협약(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이하 "CSC")을 채택하였다. 이는 사전에 기금을 유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에 체약국이 기금을 각출하여 국내법상의 기금을 넘는 피해를 추가로 배상하는 상호부조 제도로서, 그 기제를 보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산출한 각국의 분담액 (원자력시설 용량을 주인자로 하고 유엔비용분담률을 보조인자로 하여 각국의 분담률 결정)을 각출하여 기금을 형성하고, 그 기금의 50% 까지는 국내외 손해의 배상에 무차별적으로 배당하고, 기금의 나머지 50%는 외국의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배당하는 기제로 되어 있다.

라. P/C

한편 P/C는 현재 상설위원회에서 위 비엔나협약과 비슷한 개정작업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개정작업은 결실을 볼 것으로 보인다.

마. 원자력손해배상법

우리나라는 2001. 1. 16. 원자력손해배상법을 개정하여 상술한 국제협약 개정의 정신을 반영하였다. 2001. 7. 30. 동법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현재는 원자력손해배상조치의 하나인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하여 원자력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에 있다.

2.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협약 개정의 영향

가. 개정 V/C 및 CSC 발효의 효과 및 각국의 대응전략

1) 개정 V/C와 CSC가 P/C국가에 미치는 영향

P/C 국가들은 V/C 개정의정서에 규정된 것에 비견할 정도의 P/C 개정이 바람직한 가에 대하여 통일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P/C의 당사국들은 P/C, 브뤼셀보충협약 및 P/C와 브뤼셀보충협약(이하 이를 포괄적으로

표1. 비엔나협약과 파리협약의 비교

	파리 협약	(개정) 비엔나협약	비 고
채택, 발효	1960년 채택, 1968년 발효	원 협약: 1963 채택, 1977 발효	개정의정서 : 서명개방
대상국가	OECD가맹국(현재 14개국)	UN가입국 (32개국)	
보유 원자로	전세계 보유기수의 34%	전세계 보유기수의 6%	
책임의 집중	시설운영자에 집중	시설운영자에 집중	구상권의 제한
면책사유	• 전쟁, 내란 등 적대행위 • 비상하게 거대한 자연재해	전쟁, 내란 등 적대행위	개정 V/C에서 천재지변 제외
유한책임	• 1사고당 5백만 SDR한도 • 175백만 SDR한도의 공적기금	• 사고당 3억 SDR	개정 협약에서 인상함. 종전은 500만금 달러
손해배상조치	• 보험 등 • 상기 유한책임 애과 동	• 보험 등 • 체약국 국내법이 정함	
국가의 지원	배상금액을 증액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가능	• 책임제한액과 배상 조치액의 차액을 보상	
재판관할권	원칙적으로 사고발생지국 기타 시설소재지국	(좌 동)	
준거법	재판관할권을 가진 범위의 국내 법	(좌 동)	
무차별적용	국적, 주소 여하와 무관하게 무 차별적인 국내법 적용	(좌 동)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함 (사업자의 책임, 배상조치의무, 정부의 지원·보상) ○ 월경손해에 대한 배상처리의 범위 설정 (재판관할권, 준거법) 		

“P/C”이라 한다)에 부수되는 의정서 등의 현재 체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P/C국들은 CSC에 가입할 자격요건이 충분하다. 미국정부 요원들은 P/C에는 SCC가 규정하는 의무와 모순되는 점은 없다고 믿고 있다.

P/C의 북유럽 회원국(예컨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및 덴마크)들은 CSC를 지지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몇몇 북유럽국가들은 CSC를 비준할 것으로 본다.

한편, 대규모의 원자력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P/C 당사국(프랑스, 벨기에, 독일, 영국) 등은 CSC 가입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원자력을 지지하는 독일정부 지도자들은 독일 의회가 반원자력법을 채택하는 결과가 있기 전에 원자력 관련법령을

표 2. '63년 비엔나협약 및 '97년 개정비엔나협약과 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 비교

항 목	'63년 V/C	'97년 V/C	(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
최저 책임한도액	USS 500만 ¹⁾	3억 SDR	3억 SDR
원자력손해의 개념	- 사망, 신체상해 - 재산의 멸실훼손	- 사망, 신체상해 - 재산의 멸실훼손 - 환경손해 (환경관련 일실 이익, 환경복구비용) - 예방조치 비용	- 방사선작용 또는 독성작용에 의하여 생긴 손해 ²⁾ - 환경이용 관련 경제적 이익 상실 - 환경복구비용 - 방제조치 비용
지리적 적용범위	- 규정 없음 ³⁾	- 비체약국내 발생원자력 손해 적용 명시	- 비체약국내 발생원자력 손해 적용 명시 ⁴⁾
물적 적용범위	- 규정 없음	- 비평화적 시설에 적용 않음	- 규정 없음
면책사유	- 전쟁 등 적대행위 - 중대한 천재지변	- 전쟁 등 적대행위 (천재지변 삭제)	- 전쟁 등 적대행위 (천재지변 삭제)
소멸시효	- 10년 - 손해 및 책임있는 자업자를 안 날로부터 3년 ⁵⁾	- 인적손해 30년; 기타 손해는 기타 10년 - 손해 및 책임자업자 안 날로부터 3년	- 인적손해 30년; 기타 손해는 기타 10년 - 손해 및 책임자업자 안 날로부터 3년
재판관할권	- 사고발생지국	- 사고발생지국 -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적용 명시

1) 금달러(Sterling)로서 현재 미화로 USS 4000(≒ 3000만 SDR)으로 추정됨. 65년 순금 1온스가 35 금달러 (Sterling)이며, 현재의 금가는 약280달러(US\$)임. 따라서 1 금달러 = 8 달러로 가정하고 현재 1 SDR = 1.3 US\$로 가정하여 추정한 것임

2) 인적 손해, 물적 손해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됨

3) 체약국 영역내 및 공해상 발생 손해에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임

4) 상호주의 규정 포함

5) discovery rule: discovery rule: 체약국내 및 공해상 발생손해에 적용 해석

채택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두려워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개정 V/C에 의하여 완성될 수 있는 몇몇 주요 개정에 맞추기 위한 P/C의 수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북유럽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점은 P/C에 있어서 원자력손해나 또는 원자력사고의 정의가 충분하게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P/C에는 환경복구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V/C 개정의정서는 이 점과 아울러 여러 가지를 명백히 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및 독일은 V/C 개정의정서에 대하여 반대하지는 않고 있으나 P/C 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P/C를 개정하거나 또는 P/C의 애매한 부분, 결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의정서를 채택하기 위한 권고안이 채택될 수도 있다.

P/C국들도 V/C 개정의정서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 검토는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P/C국가의 정부만 입수할 것으로 보인다.

2) V/C 국가에 미치는 영향

CSC의 발효는 실질적으로 V/C에 따라 발효되는 재정조치(손해배상조치) 체제를 상향 조정하게 할 것이다. 특히 두드러진 것은 V/C 국가에 있어서 요구되는 배상조치 최소액은 현재 US\$ 약 5천만에서 US\$ 약 4억 (3억 SDR)로 상향될 것이다. 그러나 V/C 체약국은 최소 3억 SDR로 의무적인 상향조치가 있기 전 첫 10년간은 1억 5천만 SDR만 소요되는 선택권(option)을 가진다. V/C국 중 몇 나라는 이 선택권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본다.

V/C 개정의정서가 발효되면 핵물질, 핵제품 등의 공급자와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혜택을 주게 될 것이다. 첫째 현행 협약의 애매한 점이라든가 결점이 개선될 것이다. 예컨대 원자력손해에는 분명히 환경구조비용이 포함될 것이다. 특히 두드러진 것은 최소한의 손해배상조치액을 3억 SDR(US\$ 약 4억)로 인상하는 조항의 설정이다.

3) 공동의정서 당사국에 미치는 영향

CSC 및 V/C 개정의정서가 발효되더라도 1992년 4월 27일에 발효된 JP의 계속적인 실행에 관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을 것이다. 만약 CSC나 V/C 개정의정서가 발효되면 JP 당사국인 P/C 국가에게 적용되는 손해배상은 V/C 국가에서 원자력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증액될 것이다.

한편, 프랑스, 영국, 벨기에 및 독일은 현재 JP의 당사국은 아니다. CSC 및 V/C 개정의정서가 발효되면 이 국가들이 공동의정서 당사국이 될 추가 유인요소가 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들 국가의 원자력 지지자들은 JP 채택을 위한 비준절차가 이들 국가의 반핵주의자들이 적용할 적지 않은 문제점에 부닥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JP에 가입하기를 꺼리는 현상은 V/C 개정의정서와 CSC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계속될 것이다.

4) V/C 당사국도 P/C 당사국도 아닌 국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 일본, 중국 등 국가의 원자력 공급자 및 원자력사업자는 최근 아시아에는 없는 통일된 국제 손해배상제도를 창설하게 될 CSC의 발효에 따라 혜택을 받을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중국에 대한 유럽 및 미국의 원자력 공급자들은 증액된 손해배상 조치액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에 대한 핵연료 및 원자로 공급자들은 비록 현행 중국법에 기본적 규정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자력손해배상법이 없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일을 당한 적이 있었다. 보다 큰 명확성과 실질적으로 증액되는 최소 배상조치액은 현저할 것이며 그것은 중국이 CSC에 집착하는 것으로 연유되는 것이다.

미국은 Umbrella Convention의 창시국으로서, 원래 CSC(원래 Umbrella Convention안의 대부분의 기본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의 가장 강력한 제창자로서 1997년 9월 29일 서명식이 있었을 때 CSC에 최초로 서명한 나라였다. Price-Anderson Act로 알려지고 있는 현행 미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은 V/C와는 완전히 일치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미국이 CSC에 가입하는 것은, 미국이 국제원자력 손해배상체제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미국 관리들은 다른 국가가 적당한 시기에 CSC에 가입하도록 계속 강력한 압력을 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들은 CSC 발효(시설 용량으로 400,000 Mwt를 보유하고 있는 최소한 5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다)의 주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1. 예컨대, 일본, 남한 중국등 몇몇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더불어 (그리고 원자력사업을 하지 않거나, 또는 있어도 소규모의 사업을 하는 소수의 국가) CSC에 가입하여 CSC의 발효를 촉구한다.
2.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몇몇 유럽국가들이 미국과 더불어 CSC에 가입하여 CSC를 발효하게 한다.
3.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그리고 적어도 주요 서유럽의 원자력시설 보유국 중 한 나라(아마도 영국)와 또는 하나 이상의 소규모의 원자력시설 보유국이 CSC에 가입할 것이며, 400,000 Mwt 기준을 만족시켜 동협약을 발효하게 할 것이다.

CSC 발효를 위한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미국, 러시아, 아시아의 한 두 개 원자력시설 보유국 또는 몇몇 소규모 원자력시설 보유국에 의한 가입일 것이다.

5) 결론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CSC 당사국이 됨으로써 그들의 이익이 보장된다고 믿고 있다. CSC의 발효는 오직 일정지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P/C나 주요 원자력시설 보유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V/C를 보충하기 위하여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참된 국제체제를 확립하게 될 것이다. CSC의 전망은 미국을 비롯한 몇몇 주요 원자력시설 보유국이 동 협약을 되도록 신속히 발효시키는 신속한 조치에 주로 달려 있는 것 같다.

원자력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V/C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현저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 1990년대에 V/C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몇몇 국가들(헝가리, 체코 및 불가리아를 포함)은 V/C가 허용하는 원자력손해배상의 최저한도(US\$ 5백만)에 매달리지 않고 대신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무제한)의 손해배상액을 택했다. 이들 국가에 있어 손

해배상의 최소한도는 귀찮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주요한 논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V/C 개정의정서와 CSC의 조속한 지지자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만일 그렇게 되면, 원자력안전에 종사하는 서구의 많은 원자력사업 공급자들이 현재 취하고 있는 주저하는 태도는 국제사회에 대한 원자력안전 이익과 함께 없어질 것이다.

나. 우리나라가 개정 V/C에 가입하는 경우의 특설 분석

1) 서

CSC와 V/C 개정의정서의 초안 작성국으로서 V/C 당사국이 아닌 여러 나라들은 비록 V/C가 많은 문제점을 없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V/C의 당사국이 되지 않고 CSC에 가입할 것 같다. CSC 당사국이 되고자 하는 국가들은 1) V/C이나 P/C의 당사국이 되거나, 2) 손해배상 관련 국내 법령이 SCC 부속서에 규정된 기준에 일치하여야 한다.

주요 원자력 사업계획이 있는 미국이나 기타 몇몇 나라들은 CSC 가입에 특히 유념하고 있는 것 같으나 V/C 당사국이 될 것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자력사업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 필리핀은 V/C에 가입하고 있는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이다.

만족스러운 정도의 원자력손해배상 체제가 없는 중국은 V/C에 가입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으며, 만일 그렇다면 CSC 가입의 자격이 자동적으로 생긴다.

상술한 이유 때문에 V/C 또는 P/C 당사국은 아니지만 CSC 부속서에 대체로 일치하는 원자력손해배상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V/C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CSC에 가입할 것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다.

2) 한국의 공공보호와 관련한 V/C 및 보충협약 가입에 따른 장단점

가) 보상조치액의 증액

한국은 최근 원자력손해배상법을 개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3억 SDR로 한정하고 배상조치액 상한선을 3억 SDR로 하였다. 다만, 배상조치액의 상한은 3억 SDR로 하였지만 구체적 이행으로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증액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 CSC 의 당사국이 되어 CSC부속서 제4조 및 제5조의 보상조치 요건(운영자의 재정조치액 1 억5천만 SDR과 공공기금 1억 5천만 SDR)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다.

나) 한국 영역 외에서 발생한 원자력사고에 관련된 CSC 및 V/C 가입의 장단점

현재 한국인들은 국내 법령에 충분한 수준의 강제적 배상조치를 결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 또는 기타 국가에서 원자력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보상

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만일 중국, 러시아가 CSC에 가입하고 또한 동 협약이 발효되면, 한국 국민은 그러한 국가에서 발생한 원자력사고의 결과로 한국에서 입은 피해 또는 손해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 또는 손해배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이 V/C에 가입하나 CSC에는 가입하지 않고 또한 중국, 러시아 및 일본이 V/C 당사국이 되지 않고 CSC에 가입할 경우에는 물론, 이들 국가는 한국이 그들에게 그러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입은 원자력손해에 대한 재정적 보호를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편 일본은 1999. 5. 10. 국내법을 개정하여 배상조치액을 ₩600억으로 인상함으로써 협약 가입의 전제조건을 마련하였으며, 우리 국민에게 상술한 바와 같은 우려를 주지 않는다.

다) 한국 원전에서의 원자력손해 배상책임

한국법에 의하면 원자력사고로 인하여 손해 또는 종업원이 입은 손해는 한국 원자력손해배상책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한편 부속서 제3조에 의하면 원자력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원자력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원전부지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의 배상에 관하여 CSC 부속서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영의 건강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근로자의 보상 또는 직업병 보상제도에 관한 규정이 원자력손해배상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동제도에 의한 수혜자의 권리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은 동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체약국의 국내법 또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체약국 정부간 조직된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한 (a) 원자력시설 자체 및 기타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부지에서 건설중인 원자력시설을 포함한 원자력시설이나 (b) 어떤 시설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동일한 부지에 있는 재산에 대한 손해는 원자력사업자의 책임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렇듯 현행 한국법은 운영자의 시설 및 종업원에 관하여 CSC 와 V/C의 기본원칙과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CSC, V/C 또는 양 협약의 당사국이 될 경우에 한국법은 원자력시설이나 동 시설내의 종업원의 손해에 관하여 국내법을 현저하게 바꿀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라) 한국 영역 외에서 발생한 원자력사고로 인한 한국의 책임

한국의 공급자가 CSC 또는 V/C 당사국인 서유럽 제국 또는 적절한 국내법으로 충분한 배상조치가 마련된 국가 (예를들면 미국, 캐나다)에 대하여 용역 또는 제품을 제공하면 원자력사고시 제3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위험을 크지 않을 것이다.

적절한 원자력법이나 손해배상조치를 갖고 있지 않은 국가(예컨대 중국, 러시아)의 원자력시설에 용역 및 제품을 현재 제공하고 있는 한국의 원자력공급자는 CSC를 지지하는 것 자체로부터 얻는 이익이 있을 것임은 명백하다. CSC가 발효하고 또한 중국, 러시아, 일본 및 한국이 CSC의 당사국이 될 경우에는 이들 국가에서 발생한 원자력사고로 인한 피해 또는 손해를 입은 한국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메카니즘이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원자력사고시 그 지역 전체에 걸친 손해배상조치로부터 한국이 받는 이익은, 어느 CSC 국가에서 중대한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경우 CSC 제3조에 따른 그 국가의 국내 자금을 소진하여 한국정부(와 아마도 한국 원자력사업자)가 의무적 기여금을 부담할 위험성과 대가관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사업자가 이러한 배상조치의 인상으로 말미암아 부담할 추가비용은 연간 약 70억 내지 90억 원으로 추산된다.

3. 결론

원자력손해배상법의 개정과 현재 진행중인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완료되면 개정 비엔나협약이나 보충배상협약 가입의 (배상조치액의 점진적 증액이 남아 있으나) 논리적 조건은 충족되는 셈이다. 협약의 가입은 역내 다른 국가의 가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고 이에 따라 중국, 대만, 일본 등이 협약에 가입한다면 우리 원자력사업자가 외국에 원자력수출을 할 경우 배상책임의 우려가 제거된다. 이미 국내법 개정을 완료한 지금 배상조치를 위한 비용에 비추어 이러한 이득이 균형을 이룬다면 협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북한경수로 공급사업에서 주계약자 국가로서의 상술한 우려가 북한에서도 불식되기를 바라는 상황에 있으므로 그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원자력손해배상자료집, 1999,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 원자력손해배상제도 및 그 개선, 『과학기술법연구 제6집』 (2000. 12.), 한남대학교
3. Effect of Entry Into Force of Amended Vienna Convention and Supplementary Compensation Convention, Nuclear Third Party Liability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1997. 10), Morgan Lewis & Bockius
4. 국제원자력손해배상법(I), 2001. 박기갑